



해외 공·사적연금 비중과 시사점

강성호 연구위원

요약

■ 주요 선진국의 공적연금 개혁을 살펴보면, 공적연금 급여 축소에 따라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추세임. 이미 OECD 17개국의 사적연금 가입은 강제 혹은 준강제적이며, 이외 6개국의 경우는 임의 가입이기는 하지만 생산가능인구의 40% 이상이 가입할 정도로 보편화되고 있음(OECD 2012). 한편, OECD 순소득대체율 기준으로 공·사적 연금 급여 비중을 보면, OECD 국가의 사적연금 급여는 공적연금 급여의 약 53.7% 수준으로 추정됨(OECD 2011). 반면 우리나라의 사적연금 급여비중은 퇴직·개인연금 가입률이 낮아 OECD가 추정한 주요국 사적연금 급여 비중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보임.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공·사적 연금이 연계된 소득계층별 맞춤형 제도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의 한계로 '90년대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사적연금을 강화하고 있음.

- OECD(2012)에 의하면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이전세대에 비해 약 3.5세 더 오래 살고¹⁾, 향후 50년간 평균수명은 7년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 퇴직연령은 OECD 회원국의 절반이 65세, 14개국에서는 67~69세로 전망하고 있음.
- 특히, 덴마크나 이탈리아처럼 퇴직연령을 평균수명 변화에 연동시키고 민간연금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권고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이미 OECD 17개국의 사적연금 가입은 강제(호주, 칠레 등) 혹은 준강제적(덴마크, 네덜란드 등)이며, 이외 6개국의 경우 임의가입이기는 하지만 생산가능인구의 40% 이상이 가입하고 있을 정도로 보편화되고 있음.

■ 최근 OECD 복지국가들이 공적연금보다 사적연금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무엇보다 공적연금의 재정문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나, 재정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들은 또 다른 노후소득보장 문제를 발생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음.

1) OECD Pensions Outlook 2012, p. 11 참조.

- 공적연금 재정운영은 국가마다 달라 획일적인 비교가 어렵지만, OECD 28개국 평균 GDP대비 공적연금 지출 비중은 2010년 9.3%, 2030년 10.6%, 2050년 11.7%로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됨(OECD 2012).
- 이러한 재정문제 대응을 위해 공적연금 수급개시연령 연장과 연금급여 자동조정장치가 도입·추진되었으나 이러한 조치는 연금급여의 적정성 문제와 수급자 생계문제를 초래하였고, 이들에 대해 노인근로장려와 사적연금저축 장려 등 새로운 대안이 모색되고 있음.
- 즉, 중위소득계층 이상에 대해서는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 등(독일 리스터연금, 스웨덴 적립식 개인연금 도입 등)을 통해 보완하고, 노인 및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기초보장제도 도입(영국의 연금크레딧(pension credit)제도, 독일의 노인·장애인 전용 기초보장제도, 스웨덴의 최저보증연금제도, 칠레의 최저보증연금제도 등) 등을 통해 보완하고 있음.

■ OECD 순소득대체율 기준 공·사적 연금 비중의 경우, OECD 국가의 강제사적연금²⁾ 비중은 공적연금의 약 35.3%³⁾로 추정되어 우리나라의 사적연금 확대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 OECD 34개국 평균 강제 공·사적 연금 순소득대체율은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공적연금 50.1%, 강제사적연금 17.7%여서 공적연금 대비 강제사적연금 비중은 35.3%이며, 임의사적연금 9.2%까지 고려하면 공적연금 대비 사적연금 비중은 53.7%로 추정됨.
- OECD 모델과 유사한 방법으로 추정한 우리나라 강제사적연금(퇴직연금 가정) 비중은 34.9%인데, 여기에는 국민연금 47.5%⁴⁾에 대응한 퇴직연금 16.6%⁵⁾가 포함된 결과임.
 - 동 결과는 현행 퇴직연금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를 가정할 때, OECD 평균 강제사적연금의 평균비율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나아가, 임의가입 개인연금이 OECD 평균 임의가입 사적연금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약 9.2%⁶⁾의 평균 소득대체율을 보장해야 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연금 보험료로 소득의 4.6%를 40년간 납부(혹은 9.2% 수준에서 20년 납부)해야 함(단, 임금상승률, 금리, 할인율을 동일하게 하고, 20년 수급, 수익비=1을 가정하여 산출).

2) 사적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처럼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를 의미함.

3) 임의사적연금까지 고려할 경우 53.7%로 추정됨.

4) OECD Pensions Outlook 2012, p. 207의 순연금소득대체율(공적연금)임.

5) 현행 퇴직금 보험료율인 8.3%를 고려하여 40년 가입, 20년 수급을 가정하면(임금상승률, 금리, 할인율을 동일하게 하고, 수익비=1을 가정) 소득대체율은 16.6%로 추정할 수 있음.

6) OECD Pensions Outlook 2012, p. 207을 참고하여 저자가 산출. 즉, 공적연금, 강제, 임의 사적연금까지 포함한 순연금 소득대체율은 77.0%, 공적연금, 강제사적연금만 고려한 순연금소득대체율은 67.8%임을 고려할 때, 임의 사적연금대체율은 9.2%로 추정할 수 있음.

- 그러나 준강제적으로 적용되는 퇴직연금이 있지만 가입율이 2012년 기준 46%에 불과하고 임의가입으로 운영되는 개인연금 가입률은 2012년 건수 기준으로 26.3%여서, OECD 모델에 의한 사적연금 비중에는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됨.

■ 해외 공·사적 연금 비중과 연금제도의 성숙도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무엇보다 공·사적 연금의 연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고 세제개편,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한 사적연금 활성화가 필요함.

- 공·사 연금 연계강화를 원칙으로 최저노후소득보장은 공적연금이, 그 이상의 소득보장은 사적연금이 담당할 수 있도록 체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저소득층은 공적연금 중심으로, 중위소득 이상에서는 사적연금 중심으로의 공·사연금 제도의 역할 분담이 필요
- 한편, 사적연금 기능강화를 위해 중위소득계층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 확대와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개인연금 가입 보조금 지급 등 소득계층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고, 소득공제에 따른 역진성 문제 완화를 위해서는 캐나다의 크로백⁷⁾ 제도와 같은 연금소득과세제도를 통해 보완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로 이원화된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단일화하여 사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임. [kiri](#)

7) 연금수급기에 일정소득 이상의 연금소득이 발생할 경우 세금을 통해 연금보조금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임.